

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 []지정 []변경 []해지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즉시
가입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 · 국내거소신고번호)		
	전화번호(자택)		휴대전화번호		
	주소				
	전자우편주소 (e-mail)				
지정 · 변경 송달장소	주소				
	우편번호				
대리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 · 국내거소신고번호)		
	전화번호(자택)		휴대전화번호		
	주소				
	가입자와의 관계			※ 코드	

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격 취득 등의 통지를 위의 송달장소(송달장소의 지정·변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래의 주소)로 송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일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

작성방법 및 확인사항

- 색상이 어두운 란과 "※"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.
- 송달장소를 처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"[]지정"에, 변경하는 경우에는 "[]변경"에, 해지하는 경우에는 "[]해지"에 √표를 하십시오.
- 가입자 기재란의 "성명", "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", "주소"는 주민등록등·초본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상의 "성명" 및 "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", "주소"로서 공단에 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
-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필수사항이고, 전자우편주소(e-mail)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.
- 지정(변경) 송달장소는 정확히 기재하십시오.
 - 아파트,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, 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기재
- 송달장소를 지정(변경) 또는 해지 신청한 경우**
 - 주소지 외에 별도의 송달지가 있는 경우, 국민연금관련 우편물(고지서 제외)은 귀하가 지정한 송달지로 발송되며, 송달지를 해지한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
 - ※ 2011.1.1. 이후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고지서 송달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, 고지서를 제외한 일반 안내문 송달지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고지서가 매월 5일까지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(☎1577-1000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이 없어도 송달장소가 해지되는 경우**
 - 송달장소 지정 신청을 하신 경우라도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- 송달지 지정 이후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- 송달장소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지됩니다.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(국번없이 ☎1355)로 문의하십시오.

처리절차

